

서울특별시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979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9년 8월 7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공휴일, 야간시간 대 아픈 유기동물과 동물보호센터가 치료할 수 없는 수준의 위급한 유기동물의 이송·치료를 위해 24시간 운영될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를 설치·운영하고자 함.
- 나. 위급한 유기동물의 치료를 위해서는 고난위도의 전문성이 확보된 민간기관에 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주요 위탁내용

- 위탁기간 : 2020.4.1.~2022.12.31.(2년 9개월)
- 위탁업무
 -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위급한 상태의 유기동물 이송·치료
 -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 등 위급한 상태의 유기동물 이송·치료
 - 동물보호센터나 동물복지지원센터의 동물의료 상담 및 교육
 - 기타 동물보호 및 복지사업
- 소요예산 : 450,000천원(2020년 예산)
- 선정방법 : 공개모집(신규)

나. 민간위탁 근거 및 필요성

- 동물보호법 제14조(동물의 구조·보호)
- 서울특별시동물보호조례 제14조(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 설치·운영)
- 필요성
 - 2018년 9월 소방관의 생활안전 출동기준의 변경으로 유기동물 구조·출동 거절이 가능해 집에 따라 이에 대한 보완으로 24시간 운영되며 아픈 유기동물의 이송·치료를 수행할 기관이 필요
 - ※ '18년 3월 유기견 구조 중 3명의 아산소방관이 사망한 사건발생
(서울시 소방관 동물 구조·출동 : '17년 1일 평균 53건)
 - ※ 동물보호센터의 출동은 평시간대 위주로 운영되며, 20개 자치구가 경기도 양주시 보호소와 계약되어 있는 등 신속한 이송치료가 어려운 상황임.
 - 서울시는 전국 대비 높은 유기동물 안락사율을 보이고 있고, 동물보호센터는 치료비용 부담, 진료수준 등의 다양한 이유로 유기동물의 치료가 원활하지 못하는 상황임에 동물보호센터가 치료할 수 없는 수준의 유기동물의 이송·치료를 수행할 기관이 필요
 - ※ 유기동물 안락사율('17년 기준) : 서울시 25.8% > 전국 20.2%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동물보호법 제14조(동물의 구조·보호)

① 시·도지사(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, 제15조,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, 제21조, 제29조, 제38조의2,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, 제41조의2, 제43조, 제45조 및 제47조에서 같다)와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7조에 따라 치료·보호에 필요한 조치(이하 "보호조치"라 한다)를 하여야 하며,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·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.

1. 유실·유기동물
2.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
3. 소유자로부터 제8조 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·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

- 서울특별시동물보호조례 제14조(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 설치·운영)

- ① 시장은 유기동물의 응급치료 등을 위해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②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하고 있는 위급한 상태의 동물의 이송·치료
 - 2.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 등 위급한 상태에 있는 동물의 이송·치료
 - 3. 동물보호센터와 동물복지지원센터의 동물의료 상담 및 교육
 - 4. 그 밖에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
-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④ 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하는 경우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
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
-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 - 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 - 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 - 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 - 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나. 예산조치 : 2020년 예산편성(민간위탁금 450,000천원)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.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.

※ 작성자 : 동물보호과 동물정책팀 윤 민 (☎02-2133-7649)